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 7. 7 선고 2020가합127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 2022. 10. 13 선고 2021나13644 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 7. 7 선고 2020가합1271 판결

전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상범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박현철

변론종결 2021. 6. 9.

판결선고 2021. 7. 7.

주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300,000,000원 한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 및 원고의 자회사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F 주식회사, 이하 'E'라 한다)는 2016. 11. 15.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G, 이하 'C'이라 한다)과, C이 보유한 'H' 특허권리의 일부(각 1%)를 원고와 E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원고가 C에 3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되, 원고와 E가 C으로부터 구매하는 투수블럭 대금의 30%를 위 대여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70%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허기술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특허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2016. 12. 6. C에 3억 원을 대여하였다.

E는 2017. 8. 31.경 C으로부터 투수블럭을 공급받아 이를 주식회사 I가 공사 중인 구미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납품하였는데, 위와 같이 납품한 투수블럭에 블럭간 색상 불일치, 크기 차이로 인한 유격 발생 등 품질상 하자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C은 2018. 12. 1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 2019. 1. 29. 접수 제338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9. 3. 31. 폐업하였다.

원고는 2019. 11. 18. C을 상대로 이 사건 특허양도계약을 해제하니 대여금 3억 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9856호). 법원은 2020. 4. 2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0. 5. 13.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3,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는 2019. 2.경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2020. 6. 17.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법인이므로 그 대표자)가 2019. 2.경이나 이 사건 소제기로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위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지원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3억 원의 대여금 반환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고, 그 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또한 있었음이 인정된다. 원고의 C에 대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원고, E 및 C은 원고의 3억 원 대여금을 피고가 지속적으로 원고와 E에 투수불력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할인(공제)하는 방식으로 변제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특허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위 계약 제8조 제2항은 어느 일방의 계약위반이 있을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원고는 C이 2017. 8. 31. 납품한 투수불력의 하자에 관하여 그 무렵부터 C 측에 수차례에 걸쳐 하자 보완 내지 물품 재공급을 요청하였으나, C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와 같이 C이 정상적으로 투수불력을 납품할 의사를 보이지 않은 이상, C은 원고에 의한 계약해제 등을 거쳐 대여금 3억 원을 원고에게 현실로 반환하여야 할 것임이 충분히 예상된다.

○ C은 그와 같이 하자보완 등을 하지 않음에 그치지 않고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영업을 폐지하기에 이르러 C이 투수불력 납품 및 이 사건 특허양도계약의 지속 불가능이 현실화되었다.

○ 피고는 원고, E 및 C이 위 하자 발생 이후 2018. 8. 16. 이 사건 특허양도계약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하자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양 계약서(갑 제16호증)의 문면상 계약 당사자들의 상호가 변경된 상호로 바뀐 점, 계약 체결일이 달라진 점 외에 계약 내용은 동일한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 등이 C의 책임을 면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 오히려 C은 위와 같이 C이 투수불력 하자를 보완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특허양도계약을 해제하며, 따라서 원고에게 대여금 3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원고의 위 소송상 소장부분을 송달받고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론 내지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바와 같이 C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였는바, 이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C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정상적인 가격에 매각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이 위와 같이 원고의 지속적인 하자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원고의 채권 실현이 어려워진 점, 그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영업을 폐지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표이사 J가 C의 임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J는 원고, E와 C 사이의 자재공급계약을 담당추진했던 점, C과 피고가 영위하는 업종이 상당 부분 같고, C의 폐업시기(2019. 3. 31.)와 피고의 설립시기(2018. 12. 18.)가 근접한 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어받아 C과 동일한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 피고와 C이 서로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K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각 말소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16억 원,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액이 11억 3,600만 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해야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액 3억 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4억 6,400만 원(= 이 사건 부동산 가액 16억 원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합계 11억 3,600만 원)에 미달하므로, 결국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3억 원 한도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선양, 판사 최민석, 판사 김기호

별지

부동산의 목록

1. 충청남도 논산시 동

일반철골구조 난연3급판넬지붕

1층 공장 580.9㎡

부속건물

일반철골구조 난연3급판넬지붕

1층 자재창고 243.04㎡

2. 충청남도 논산시

공장용지

7101㎡

3. 충청남도 논산시 동

일반철골구조 난연3급판넬지붕

1층 일반공장 710.06㎡

4. 충청남도 논산시 동

경량철골구조 난연3급판넬지붕

1층 사무실, 식당 170㎡

5. 충청남도 논산시

잡종지 571㎡

